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재 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2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보험계리사·세무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3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의3. 다음 각 목의 허가·면허·등록·인가·신고 수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 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변경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허가 갱신
  - 나.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 운임·요금의 신고·변경신고 수리
  - 다.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변경신고 수리
  - 라. 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 운임·요금의 신고·변경신고 수리
  - 마.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말소신고 수리
  - 바.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수리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 및 위원회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2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6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p>마.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할 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p> | <p>운행정지<br/>(3일)</p> | <p>운행정지<br/>(5일)</p> |
|--|----------------------|----------------------|



|  |  |  |  |  |  |  |  |  |  |
|--|--|--|--|--|--|--|--|--|--|
| <p>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차고지와 인접한 자기 소유의 주차장에 밤샘주차한 경우</p> <p>3)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영업 중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밤샘주차한 경우</p> <p>4)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대여 중에 밤샘주차한 경우</p> <p>5)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밤샘주차한 경우</p> |  |  |  |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 또는 지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추가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 제한되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